

공익목적회사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91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차규근·백선희·서왕진
김준형·정춘생·이해민
윤종오·신장식·황운하
강경숙·용혜인·염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영리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적기업 제도는 엄격한 인증 요건 등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을 뿐 아니라 인증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설립 단계부터 공익목적을 정관에 명시하면서도 「상법」상 회사 형태를 기반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경영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법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기반으로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신설하고,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 운영, 공시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과 기업경쟁력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회사의 정의(안 제2조)

공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식회사로 정의함.

나. 공익목적회사의 법인격 및 명칭(안 제3조 및 제4조)

- 1) 공익목적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함.
- 2) 공익목적회사의 상호에는 공익목적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공익목적회사가 아닌 자는 공익목적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공익목적회사의 설립 및 인가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1) 공익목적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고, 창립총회 결의를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2) 공익목적회사는 정관에 목적, 이익 등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3) 공익목적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공익목적회사의 사업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1) 공익목적회사는 공익목적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주된 사업을 공익목적회사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함.
- 2) 공익목적회사는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 한도에서 이익배당을 하며, 이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의 반환을 명령 또는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3) 공익목적회사는 정관변경,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양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기타 조직변경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마. 공익목적회사의 지원(안 제13조 및 제14조)

- 1)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2)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융자·보증 또는 투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기타 공익목적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공익목적회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안 제15조)

- 1) 공익목적회사는 이 법에 따른 공익목적회사 이외의 법인과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함.
- 2) 「상법」의 절차에 의해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며, 그 절차가 끝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등기하도록 함.
-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공익목적회사는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사. 공익목적회사 잔여재산의 처리(안 제18조)

공익목적회사가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공익목적회사,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국고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도록 함.

아.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안 제19조 및 제20조)

- 1) 공익목적회사는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주주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회계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채권자와 주주는 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2) 공익목적회사는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주주총

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공시서류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하며 통합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익목적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자. 감독·조사 등(안 제21조)

- 1)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2)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익목적회사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익목적회사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3) 기획예산처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공익목적회사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공익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4) 기획예산처장관은 감독의 결과 공익목적회사가 이 법, 이 법에

다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차. 설립인가의 취소(안 제22조 등)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기한 내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카. 과태료(안 제24조)

공익목적회사가 아닌 자가 공익목적회사와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회사가 설립인가·등기의무, 운영의 공개의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익목적회사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과 경쟁력을 갖춘 회사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익목적회사”란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② “공익목적사업”이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① 공익목적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 ② 공익목적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명칭) ① 공익목적회사의 상호에는 공익목적회사라는 문자를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목적회사가 아닌 자는 공익목적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설립 및 인가

제5조(공익목적회사의 설립) ① 공익목적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설립절차,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성 및 지속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목적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조(정관) 공익목적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공고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이익 등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0. 주식의 양도에 관한 사항

제8조(설립의 등기) ① 공익목적회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와 제10호의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가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7조에서 정한 사항
 7.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1.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제9조(설립보고 등) 공익목적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

- 제10조(사업) ① 공익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의 권익 및 복리 증진, 그 밖에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공익목적회사 전체 사업활동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익의 배당 제한) ① 공익목적회사는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 회사채권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변경인가 등) 공익목적회사는 설립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관 중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3. 공익목적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변경

제13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융자·보증 또는 투자
2. 공익목적회사를 창업하려는 자 및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3. 그 밖에 공익목적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5조(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① 공익목적회사는 이 법에 따른 공익목적회사 이외의 법인과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② 공익목적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

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공익목적회사는 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합병으로 소멸하는 공익목적회사의 권리·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익목적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익목적회사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공익목적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해산) ① 공익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또는 분할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설립인가의 취소

② 공익목적회사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청산인) ① 공익목적회사가 해산한 경우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공익목적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청산계획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였으나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

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공익목적회사가 해산한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시켜야 한다.

1. 유사한 목적의 공익목적회사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 국고

제5장 공개 및 감독

제19조(운영의 공개) ① 공익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주주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주주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채권자와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경영공시) ① 공익목적회사는 기획예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익목적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목적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목적회사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감독·조사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목적회사(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

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익목적회사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공익목적회사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공익목적회사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공익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익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공익목적회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공익목적회사에 대

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익목적회사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2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2조에 따라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목적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5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익목적회사로서 영업한 자
 3.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9조에 따른 공개의무를 위반한 자
 5. 제20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한 자
 6.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하여 거짓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
 7. 기획예산처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목적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목적회사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공익목적회사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

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공익목적회사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익목적회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